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526
----------	-----

2023년 5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2월 6일 김경 의원 외 33명
-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 상정일자 : 제318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4월 26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김경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보육현장에서는 또래 영유아와는 다른 행동이나 발달 양상을 보이는 장애위험 영유아로 인한 어려움이 많이 보고되고 있음. 이처럼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위험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영유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5호 신설).
- 나.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으로 장애위험 영유아를 위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및 교육·정보제공을 규정함(안 제8조제3호 및 제4호).

3.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나. 입법예고 : 2023. 2. 14. ~ 2023. 2. 19.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III.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이 조례 정의규정에 ① ‘장애위험 영유아’의 뜻을 규정하고, ② 영유아 발달지원사업의 범위에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위험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 내용별 검토

가.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5호 신설).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이 조례 제2조제5호에 ‘장애위험 영유아’의 뜻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장애위험 영유아”란 발달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발달 지연을 보이는 등 장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2) 검토의견

-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의 성장 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¹⁾,
현행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²⁾,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³⁾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⁴⁾, 「의료급여법」 제14조⁵⁾에 따라 '0~6 세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료⁶⁾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표-1 참조>.
 - '영유아건강검진 사업의 대상'은 ① 의료급여수급권자, ② 건강보험가입자로 구분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 시·군·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음.

1) 자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2022. 2.) 2022년도 건강검진사업안내. p23.

- 2)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진단·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성·연령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 실시와 관련된 안내 및 건강검진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
- 3)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①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되어,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 5)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횟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6) 비용부담: 본인부담 없음

〈표-1〉 2021년 영유아건강검진 사업대상 및 시행주체⁷⁾

구분	대상	시행주체 (시행방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u>20,780명</u> (위탁수행: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가입자		2,395,917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수행)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고 및 지방비로 부담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재정으로 부담

*** 서울시 4,121명

- ‘영유아건강검진 항목’은 5개 분야 2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차(9~12개월)부터 8차(66~71개월)까지는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도구를 이용하여 발달평가를 실시하고 있음(표-2 참조).

이러한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70%이면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에게는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음.

- (지원항목)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지원금액) ①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②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차상위계층 제외)인자

7) 자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2022. 2.) 2022년도 건강검진사업안내. p24.

8) 발달선별평가는 6개 핵심발달 영역(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으로 구분되며, “양호”,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 “지속관리 필요”로 판정함.

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표-2〉 영유아건강검진 검진항목9)

검진항목		목표질환	1차 검진 (생후 14~35일)	2차 검진 (4~6개월)	3차 검진 (9~12개월)	4차 검진 (18~24개월)	5차 검진 (30~35개월)	6차 검진 (42~48개월)	7차 검진 (54~60개월)	8차 검진 (66~71개월)
문진 및 진찰	시각 문진	시각이상(사시)	●	●	●	●	●	●	●	●
	외안부 사진		●	●	●	●	●			
	시력 검사	굴절이상(약시)						●	●	●
	청각 문진	청각이상	●	●	●	●	●	●	●	●
	귓속말검사	청각이상						●		
	예방접종확인	예방접종								●
신체 계측	키	성장이상	●	●	●	●	●	●	●	●
	몸무게		●	●	●	●	●	●	●	●
	머리둘레		●	●	●	●	●	●	●	●
	체질량지수		비만				●	●	●	●
발달평가 및 상담		발달이상			●	●	●	●	●	●
건강 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예방	안전사고예방	●	●	●	●		●	●	●
	영양	영양결핍(과잉)	●	●	●	●	●	●	●	●
	수면	영아돌연사 증후군	●	●						
	구강 문진	치아발육상태			●					
	대소변가리기	대소변가리기				●	●			
	전자미디어노출	전자미디어노출		●		●			●	
	정서 및 사회성	사회성 발달			●		●			
	개인위생	개인위생				●				
	취학 전 준비	취학 전 준비					●			●
구강 검진	진찰 및 상담	치아우식증								
	치아검사					●				
	기타 검사 및 문진							●	●	
	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42~53개월), 3차 검진(54~65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 2022년 기준 서울시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자¹⁰⁾는 총 2,980명으로, 2020년도 지원 대상자인 1,824명 보다 1,156명이 증가함.

〈표-3〉 서울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실적¹¹⁾

(단위: 명,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대상자 수	1,824	2,309	2,980
*지원인원	**309	***331	****357
지원율	17.0%	14.3%	12.0%
예산액(국비)	93,480	105,184	125,506
집행액(국비)	28,189	25,960	27,437

*발달장애 정밀검사 이용자

**20년 정밀진단 검사비를 지원받은 309명 중 정상 33명, 발달장애 276명

***21년 정밀진단 검사비를 지원받은 331명 중 정상 46명, 발달장애 285명

****22년 정밀진단 검사비를 지원받은 357명 중 정상 58명, 발달장애 299명

- 2022년 기준 서울시의 전체 영유아 수는 34만 5,083명으로 매년 그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표-4 참조),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¹²⁾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70%이면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표-3 참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위험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

10)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70%이면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11) 자료: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12) 발달선별평가는 6개 핵심발달 영역(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으로 구분되며, “양호”,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 “지속관리 필요”로 판정함.

한 것으로 보여짐.

〈표-4〉 최근 3년 서울시 영유아 현황¹³⁾

(단위: 명,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407,374	375,106	345,083
영아(0~3세)	206,077	188,659	179,989
유아(4~6세)	201,297	186,447	168,094

- 다만, 자치법규에서 어떠한 용어를 정의규정에 둘 것인지는 “통상 그 용어가 자치법규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용어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¹⁴⁾,
 - 현행 조례는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고려하여 ① ‘제명’을 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조례라 정하고 있다는 점, ② 조례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 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영유아 발달 지원”이라는 점, ③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정책 대상이 장애위험 영유아뿐만 아니라 단순 발달 지원을 보이는 영유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¹⁵⁾,
- 이 조례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영유아 발달 지원’의 의미를 이 조례 정의규정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현행 조례의 입법

13) 자료: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14) 자료: 법체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2022. 8.)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96.

[차별적 · 권리적 용어] 특정 집단이나 계층, 대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나 고정 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용어는 순화된 표현으로 바꾸어 쓴다.

15) 자료: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2022. 3.) 2022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운영계획. p7.

[사후관리] 검진결과 유소견자 및 추가 교육 희망자는 각종 모자보건 사업과 연계 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및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등) 담당인 동주민센터로 연계

취지나 기본방향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① 개정안의 ‘장애위험 영유아’란 “발달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발달지연을 보이는 등 장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영유아”라 정의하려는 것인데, 발달선별평가에서 ‘심화평가권고¹⁶⁾’의 의미¹⁷⁾는 “영유아의 발달에 반드시 이상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단지 좀 더 정밀한 평가를 위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의 여부를 진단해 봐야 한다는 뜻”이라 밝히고 있으므로,

영유아의 발달이 동일한 연령의 영유아보다 지연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장애위험 영유아”라 포함하여 지칭하는 것은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¹⁸⁾도 있어 보이므로, ‘발달지연 영유아’로 바꾸어 쓰는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나.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으로 장애위험 영유아를 위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및 교육·정보제공을 규정함(안 제8조제3호 및 제4호).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이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 발달지원사업의 범위에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16) 발달선별평가는 6개 핵심발달 영역(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으로 구분되며, “양호”,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 “지속관리 필요”로 판정함.

17) 자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2022. 2.) 2022년도 건강검진사업안내. p50.

[발달정밀평가안내] 발달선별검사결과에서 ‘심화평가권고’의 의미 : 영유아건강검진에서 좀 더 정밀한 평가를 요한다고 판단되면,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됩니다. 이는 영유아의 발달에 반드시 이상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단지 좀 더 정밀한 평가를 위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의 여부를 진단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차 진료기관의 의료진은 보통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신중한 판단을 위해 정밀진단을 의뢰하게 되므로, 미리 너무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8) 자료: 법체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2022. 8.)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407.

[차별적·권위적 용어] 특정 집단이나 계층, 대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나 고정 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용어는 순화된 표현으로 바꾸어 쓴다.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2. (생 략) <u><신 설></u>	제8조(지원사업) ----- ----- ----- -----. 1. · 2. (현행과 같음) <u>3.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사업</u>
<u>3. 영유아 발달 지원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u>	<u>4. 영유아 발달 지원 예방 및 장애위험 영유아 및 보호자를 위한</u> ----- --
<u>4. (생 략)</u> <u>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u>	<u>5. (현행 제4호와 같음)</u> <u>6.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u> ----- --

2) 검토의견

- 이 조례에 추가로 규정하려는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사업’, ‘영유아 발달 지원 예방 및 장애 위험 영유아 및 보호자를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의 경우, 장애위험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는

법령 19) 20)이나 이 조례의 입법 취지 21) 22)와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여짐.

- 또한, 서울시 영유아 발달지원 관련 사업들을 보면,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②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③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④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등을 기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①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를 추진하고 있고, 2023년부터는 ② 「서울 아이 발달지원 센터」 운영(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따라서 기존의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새롭게 시행되는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

19)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진단·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성·연령별 건강위험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 실시와 관련된 안내 및 건강검진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

20)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에 대하여 화진을 위한 정밀검사, 건강위험평가 및 흡연·음주·운동·영양·비만 등 생활습관개선에 사용되는 의료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집행기관 의견(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 개정안의 ‘장애위험 영유아란 발달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발달 지연을 보이는(이하 생략)’으로 대상을 지칭하고 있어 개정안의 정의 설명과 지원대상이 일치하도록 ‘장애위험 영유아’를 ‘발달지연 영유아’로 수정함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사업은 市 시민건강국(스마트 건강과)과 여성가족정책실(영유아담당관)에서 기 시행중인 사업임.
 - (의료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선청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등
 - (복지서비스) 「서울아이 발달지원센터」 위탁계획으로 ‘23년 상반기 개소예정

※ 임상심리 상담사가 상담, 대상자 선별·치료방향 연계지원 등 (치료기능 없음)

3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이 조례 정의규정에 ① ‘장애위험 영유아’의 뜻을 규정하고, ② 영유아 발달지원사업의 범위에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 조례에 규정하려는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 서울시에서 기 추진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사업임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 다만, ① 이 조례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과 제명을 고려하고, ② 조례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가 “영유아 발달 지원”이라는 점과, ②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정책 대상이 장애위험 영유아뿐만 아니라 단순 발달 지연을 보이는 영유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조례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영유아 발달 지원’의 의미를 이 조례 정의규정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의료비 지원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6세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생후 14일~66개월까지 국가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실적 : ('22년)2,419명, ('21년)2,974명
- '23년예산 : 144,033천원 (국비50%, 시비25%, 구비25%)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70%이면서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대상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실적 : ('22년)357명, ('21년)331명
- '23년예산 : 178,232천원 (국비50%, 시비25%, 구비2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 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출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의료비 중 기준지급액 내에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미숙아) 출생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 필요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발생한 의료비
 - (선천성이상아) 출생후 1년 이내 의료기관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진단 (심장기형 등) 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이내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23년예산 : 513,500천원(국비30%, 시비35%, 구비35%)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보건소)

- 지원대상 : (선별검사)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출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확진검사) 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선별검사비의 본인 부담금,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관련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7만원 한도)의 본인부담금 지원

② 환아관리(보건소 및 인구보건복지협회)

- 지원대상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 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등 특수식이(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환아, 희귀 등 기타 질환) 지원,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③ '23년예산 : 702,000천원(국비30%, 시비35%, 구비35%)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신생아 청각선별검사)

① 선천성 난청검사비 검사비 지원(보건소)

- 지원대상 : (선별검사)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출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의 본인부담금
 - ▶ 청각선별검사 : 본인부담금 14,000원~30,000원 지원 (*출생후 6개월이내 최대2회 지원)
 - ▶ 난청확진검사 : 7만원 내 지원

②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3세(36개월)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영유아 1명당 양측 보청기 지원(1개당 131만원 한도)
 - ※ 보청기 지원개수 확대 : 1명당 1개 지원('20년) → 1명당 2개까지 지원('21년)

③ '23년예산 : 65,000천원 (국비30%, 시비35%, 구비35%)

복지서비스

-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 운영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 사업개요 : 민간위탁 계획으로 '23년 상반기 개소 예정
 - 지원내용
 - ① 초기 발달 스크리닝 검사 실시 (연간 10,000명)
 - ▶ 어린이집 : 연간 350개소(희망 어린이집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 ▶ 가정양육 아동 : 연간 3,000명 대상 온·오프라인 발달 검사 제공
 - ② 발달 스크리닝 검사 결과에 따른 지원 : 발달교육 또는 상담 서비스
 - ▶ 발달 검사결과 상세 안내 및 맞춤 발달교육 실시

- ▶ 검사 아동의 약 10%(연간 1,000명)는 심화검사 및 상담치료 등 지원

③ 서울아이 발달 지원단 운영 : 영유아 발달 통계분석 및 정책제안 등

□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사업개요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하나, '23년 14개구 시행
- 지원대상 :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의 만 0~6세 영유아
 - 가구 특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 유아교육 기관장·보육 시설장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CDRⅡ, K-ASQ 등) 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
 - 발달 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소견서와 언어지연 관련 검사결과서가 모두 첨부된 경우
 - 기타 동 서비스가 필요하여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자
 - 지원내용 : 중재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관찰·평가

를 통해 환경적 신체적 원인을 분석하고 발달이
지연되는 영역(발달기초, 언어발달, 초기인지, 정
서·사회성 등)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조기 중재 서비스를 설계하여 제공

- 바우처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12개월)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 요지

1. 수정이유

- 이 조례 정의규정에 ‘장애위험 영유아’란 발달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발달지연을 보이는 등 장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영유아로 대상자를 지칭하고 있는데,
- 개정안 정의의 설명과 정책의 대상이 서로 일치될 수 있도록 ‘장애위험 영유아’를 ‘발달지연 영유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이에 ‘발달지연 영유아’로 용어를 수정하는 등 조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제5항).
-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으로 발달지연 영유아를 위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및 교육·정보제공을 규정함(안 제8조제3호 및 제4호).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526
------------	-----------

제안년월일 : 2023년 4월 26일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이 조례 정의규정에 '장애위험 영유아'란 발달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발달지연을 보이는 등 장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영유아로 대상자를 지칭하고 있는데,
- 개정안 정의의 설명과 정책의 대상이 서로 일치될 수 있도록 '장애위험 영유아'를 '발달지연 영유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이에 '발달지연 영유아'로 용어를 수정하는 등 조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제5항).
-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으로 발달지연 영유아를 위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및 교육·정보제공을 규정함(안 제8조제3호 및 제4호).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5호 중 “장애위험 영유아”를 “발달지연 영유아”로 한다.

안 제8조제3호 중 “장애위험 영유아”를 “발달지연 영유아”로 한다.

안 제8조제4호 중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 및 장애위험 영유아 및 보호자를 위한”을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 및 발달지연 영유아 및 보호자를 위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 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과 같 다.</p> <p>1. ~ 4. (생 략) <신 설></p>	<p>제2조(정의) ----- ----- ----- --.</p> <p>1. ~ 4. (현행과 같음) 5. “<u>장애위험 영유아</u>” 란 발달 검사 등을 실 시한 결과 발달 지연을 보이는 등 장애로 이어 질 위험성이 있다고 인 정되는 영유아를 말한 다.</p>	<p>제2조(정의) <개정안과 동일></p> <p>1. ~ 4. <개정안과 동 일> 5. “<u>발달지연 영유아</u>”---</p>
<p>제8조(지원사업) 시장 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영유아 발달 지 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제8조(지원사업) ----- ----- ----- ----- ----- -----.</p>	<p>제8조(지원사업) <개정 안과 동일></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1. · 2. (생 략) <신 설>	1. · 2. (현행과 같음) 3. <u>장애위험 영유아에</u>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사업	1. · 2. <개정안과 동일> 3. <u>발달지연 영유아</u> ---
3. <u>영유아 발달 지연</u> <u>예방을 위한 교육 ·</u> 정보제공 지원사업	4. <u>영유아 발달 지연</u> <u>예방 및 장애위험 영유</u> <u>아 및 보호자를 위한</u>	4. <u>영유아 발달 지연 예</u> <u>방 및 발달지연 영유아</u> <u>및 보호자를 위한</u> ---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개정안과 동일>
5. 그 밖에 <u>필요하다</u> <u>고 인정하는 영유아</u> 발달 지원사업	6. ----- <u>시장이 필</u> <u>요하다고 인정하는</u> --	6. <개정안과 동일>
제10조(중복지원 제 한) <u>자치구, 기관 및</u> <u>단체 등에서 이 조</u> 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u>사람</u> 에 대하여 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 제한) <u>시장은 법령이나 다른</u> <u>조례 등에 따라</u> ----- ----- <u>영유아 등</u> ----- ----- ----- -----.	제10조(중복지원 제한) <개정안과 동일>
제11조(협력체계 구	제11조(협력체계 구축)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축)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 기 <u>위하여</u> 관련 법 인 및 단체 등과 협 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 ----- ----- <u>위하여</u> <u>자치구</u> , ----- ----- -----.	<개정안과 동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등을 측정하는 등 발달 지연 정도를 확인·수치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5. “발달지연 영유아”란 발달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발달 지연을 보이는 등 장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유아와 그 보호자로 하며, 구체적 지원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영유아 발달 자연 및 치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사업
2. 영유아 발달 자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

3.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사업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 및 발달지연 영유아 및 보호자를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
5.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